西洋法學東漸考

—明治·高宗代의 西洋法學 飜譯書를 中心으로—

崔 鍾 庫*

Ⅰ. 서 론
Ⅱ. 西洋法學書의 飜譯
Ⅲ. 國際法學書의 受容
Ⅳ. 結 論

Ⅰ. 서 론

전통적으로 中國·韓國·日本의 極東 3國은 中國法의 影響圈에 속해 있었지만, 19세기 이후부터는, 端的으로 표현하여 西洋法學, 그 중에서도 로마法學에서 계승·발전된 유럽大陸法系에 속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1) 어느 시대, 어느 국가마다 法이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그 法은 그 국가사회의 역사적·문화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인데, 極東 3國에 있어서 傳統法에서부터 近代法에로의 一大轉換은 그야말로 世界史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사건이요, 法史에서는 이것을 西歐法의 繼受 내지 受容(Rezeption)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2) 繼受 내지 受容은 유럽에서도 로마法이 이탈리아에서부터 北歐의 스칸디나비아 半島에까지 이르는 기간이 11세기부터 16세기에 걸치는 5세기라는 긴 세월의 역사진행이었는데,(3) 동양에 있어서 西歐法의 受容은 19세기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西歐의 충격과 함께 東洋은 급속도로 西洋法을 받아들여 오늘날까지 施行錯誤를 보이면서도 어쨌든 그 制度와 理論의 틀로서 운영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전개에 대하여 民族主義的 史觀에서 볼 때 여러가지로 비판적으로 검토할 사실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러한 史觀的 脚色을 떠나서 그 진행과정에 대한 되도록 정확한 분석만은 꼭 필요할 것이다.

西洋法의 東洋的 受容에 대하여 中國·日本·韓國의 學者들이 얼마만큼 연구했느냐 하면, 몇가지 부분적 연구를 제외하면 놀랍게도 이 방면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

* 서울大 法大 교수, 法思想史

(1) 자세히는 Zweigert-Kötz, Einführung in die Rechtsvergleichung, 1973 및 拙著, 「韓國의 西洋法受容史」, 博英社, 1982.

(2) 受容(Rezeption)에 관한 개념적 논의에 대하여는 위 拙著 참조.

(3) 자세히는 H. 코잉, 鄭鍾休역, 유럽法史에 있어서 로마法의 繼受, 「法史學硏究」(韓國法史學會) 제 7 호, 1985.

된다.[4] 硏究者 자신들이 東洋人이지만 이미 西洋法學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점에 있어서 당연히 그런 것인양 받아들이는 면이 강하고, 역사적·思想的 관심이 깊지 않은 實定法學者들은 現在의 (西洋)實定法學을 잘 해석하고 적용해나가면 一次的인 使命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或者는 점점 密着化되어 가는 現代世界에서 東西洋을 따져서 무슨 實益이 있느냐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現行法과 法學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그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는 설명할 길이 없고, 이런 점에서 法制史와 法思想史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法思想史(Geschichte der Rechtsgedanken)의 한 장르라고도 볼 수 있고, 따로 法學史(Geschichte der Rechtswissenschaft)의 영역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분야로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法學의 역사를 파악·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서양에서는 많이 정립되어 있는데 東洋法學史는 아직도 체계적 서술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5] 法學史의 서술방법에 관하여도 人物別, 大學別, 學派別, 書籍別 등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방법으로 法學書의 저술과 발행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東洋法學史는 傳統時代의 律學史를 제외한다면,[6] 19세기 후반의 淸·明治·高宗代의 西洋法受容에서 부터 설명을 시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다소 書誌學的으로 분석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 西洋法學書의 東洋語에로의 飜譯의 과정에 관한 것이다. 법학이란 예술이나 創作이 아니고 어차피 어떤 理論을 輸入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法의 受容에 있어서 飜譯法學은 불가피한 것이고, '번역' 내지 모방이라고 과소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點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開化期의 法學書들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잘못된 視角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日本의 明治時代에 西洋法學書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번역·소개되었으며, 그것이 한국에는 어떻게 전달되어 西洋法學의 韓國的 受容이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누구에 의해 저술된 西洋法學書들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디에서 번역·출판되었는가를 분석해 보면, 東洋에 있어서 西洋法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東洋法學史를 알아야 東洋人 法學徒와 法律家들이 자신이 서 있는 '번지수'를 알고, 이 '번지수'가 붙어지기까지의 '뿌리'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7]

---

(4) Zentaro Kitagawa, Rezeption und Fortbildung des Europäischen Zivilrechts in Japan, 1970; 北川善太郎, 「日本法の歷史와 構造」, 1980.

(5) 拙著, 「法學史」, 經世院 1986도 西洋法學史 中心이고, 東洋法學史는 韓國法學史만 서술하였다. 日本法學史, 中國法學史에 관하여 中國·日本에도 아직 通書가 나온 것이 없다.

(6) 이에 관하여는 拙稿, 東洋의 傳統的 法學, 「法學」(서울大), 제26권 4호, 1985.

(7) 이 論文을 작성함에 있어 서울大學校 圖書館으로부터 큰 支援을 받았음을 감사한다. 司書 金成重氏는 本稿에 언급된 書籍들의 韓國所藏 如否를 서울大 圖書館과 全國 圖書館을 확인하여 밝혀주었다.

Ⅱ. 西洋法學書의 飜譯

以上과 같은 目的으로 아래에서 西洋法學書의 册名, 著書 및 譯者, 發行年과 發行處,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의 所藏處와 그 所藏年度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圖表式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뽑은 册名은 日本에서 明治維新 100周年을 기념하기 위하여 출판한 「明治文化全集」에 수록된 '法律學文獻年表'를 크게 참고하였다.[8]

册 名 (卷 數)	著者 및 譯者	發行年	發 行 處	韓國傳來(연도)
1 立法政體略	加藤弘之 著	1868 (明治元)	谷山樓	
2 萬國公法譯義(4)	H. Wheaton 著 堤殼士志 譯	1868		국립(1943)
3 萬國公法(4)	Visserling 口授 西周助 譯	1868	竹苞樓, 瑞巖堂	
4 英政如何(5)	Von Blanc 著 鈴木唯一 譯	1868	九潛館	서울대(1944)
5 交道起源(一名 萬國公法全書)	Wheaton 著, Lawrence 補, 瓜生三寅口譯, 山岡次郎太筆受	1868	竹苞樓	
6 泰西國法論	Visserling 口授 津田眞一郎 譯	1868	江戶 開成所 후에 文部省版, 開成學校飜刻으로 나뉨.	서울대(1928)
7 外國事日記 (러시아 外務省 章程)	福地源一郎 譯	1868	九潛館	국립(1931)
8 和蘭政典(2)	神田孝平 譯	1868		서울대(1944)
9 英國刑典(2)	鈴木唯一, 後藤謙吉輯錄, 柳河卷三校刻	1869 (明治 2)	采英書屋	
10 英國議事院談(2)	브란드 등 二人 著 福澤諭吉 譯述	1869	尙古堂	서울대(1944)
11 外國交際公法	福地源一郎 譯	1869		서울대(1933)
12 佛蘭西法律書(刑法五)	箕作麟祥 譯	1870 (明治 3)	大學南校	국립(1944)
13 英國商法(3)	福地源一郎 譯述	1870	北門社	
14 眞政大意(2)	加藤弘之 講述	1870	谷山樓	서울대(1938)
15 英國海軍律令全書	子安宗峻, 柴田昌吉 譯	1870		
16 和譯萬國公法(3)	Wheaton 著, 丁韙良 譯, 重野安繹 譯述	1870	鹿兒島藩	
17 性法略	Visserling 講 神田孟恪 譯	1871 (明治 4)	求故堂	
18 會社辯	福地源一郎 譯 澁澤榮一叙	1871	大藏省	서울大(1942)
19 通法撮要	何禮之譯述	1871		서울大(1935)

(8) 이 年表는 尾佐竹 猛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明治 元年(1868)에서 明治 22年(1890)까지에 걸친 法學文獻을 망라한 것이다. 「明治文化全集」第13卷 法律篇 收錄, 그리고 西村捨也 編著, 「明治時代法律書解題」, 酒井書店, 1967도 참조.

册　名　(卷　數)	著者 및 譯者	發行年	發　行　處	韓國傳來(연도)
20 佛蘭西法律書 民法 十六	箕作麟祥 譯	1871	大學南校	
21 洋律約例(3)	치티이 著, 神奈川縣 譯	1871	神奈川縣	
22 米國律例(2)(一名 通法提要)	何禮之譯述	1871		서울大(1935)
23 立法略則	澁澤榮一述	1871	大藏省	
24 政治略原(4)	Young 著, 何禮之 譯述	1871		
25 日耳曼軍律	山口良藏譯述	1871		
26 合衆國政治小學(3)	Young 著 瓜生三寅 譯述	1872 (明治 5)	名山閣	서울大(1944)
27 和蘭邑法	神田孝平 譯	1872	文部省	國立(1943)
28 和蘭州法	〃	〃	〃	
29 和蘭司法職制法	〃	〃	〃	
30 英國裁判所略說	天野絢民, 小管英修 共編	1872		
31 國法汎論	Bluntschli 著 加藤弘之 譯	1872	文部省	서울大(1937)

(Allgemeines Staatsrecht의 譯으로 1874년까지 10册에 이르러 끝나고 그 후 數種의 刊本이 있음.)

32 邏卒勤方問答	大築拙藏 譯述	1872	橫濱活版社	
33 香港巡邏章程	何幸五郎 譯	1872	〃	
34 自由之理(6)	Mill 著, 中村敬太郎 譯	1872		서울大(1928)
35 刑罪論抄譯	Beccaria 著	1872		
36 和蘭議員選擧法	馬屋原彰 譯	1872		서울大(1944)
37 萬國政談(2)	林正明 譯述	1873 (明治 6)	求知堂	
38 泰西新論	林正明 著	1873	〃	
39 政學提綱(2)	林正明 著			서울大(1933)
40 佛國政典(12)	트라굴시 著 大井憲太郎 譯	1873	司法省	서울大(1928)
41 萬國政體起原	天香齊主人輯	1873	天香書屋	
42 英國憲法	林正明 譯	1873		
43 合衆國憲法	林正明 譯	1873		서울大(1937)
44 上木自由之論	토끄빌(Tocquville) 著 小幡篤次郎 譯	1873		
45 墺國政體沿革說	다니엘 레비 著 平山成一郎 譯	1873		
46 人門交法(2)	兒玉淳一郎 譯	1873		
47 司法省日誌(月刊)		1873～ 1876	司法省	
48 國際法(5)(一名 萬國公法)	T. Woolsey 著 箕作麟祥 譯	1873	弘文堂	
49 共和政治	란숨 기렛드 著 中村正直 譯	1873	同人社	
50 米國政治略論(2)	올덴 著, 錦織精之進 譯	1873		
51 聯邦商律(利足利篇)	米 Balson 著 藤田九二 譯述	1873	淡山樓	
52 民權大意(2)	竹中邦香 著	1874 (明治 7)	津逮堂	
53 英國刑律摭要(3)	村田保 譯	1874	村上勘兵衛	
54 議員必携	林正明 譯述	1874	印書局	

册 名 (卷 數)	著者 및 譯者	發行年	發 行 處	韓國傳來(연도)
55 白露國馬匡亞老士船裁判略譯	힐(Hill)編, 林道三郎 譯	1874		서울大(1938)
56 佛蘭西民選議員選擧法	大井憲太郎, 簑田眞藏 譯	1874		
57 政體新論	黑田行之 譯	1874	文求堂	
58 人民心得 律例要條	尾崎班象, 橫田國達 著	1874	有隣堂	國立(1942)
59 會議便法	귓싱 著, 大島貞益 譯			서울大(1935)
60 治罪法備攻 上篇九	井上毅纂	1874	須原鐵二	國立(1929)
61 憲法類編(10)		〃	明法察	
62 佛蘭西法律書 治罪法 商 法(10)	箕作麟祥 譯	〃	文部省	
63 商法會議局規則	明法察 譯	〃		
64 泰西政法沿革誌	田中知邦 譯	〃		
65 英國刑法大意	藤田九二 譯	〃		
66 國體略 附 政體	小早川惟克 著	〃		
67 英國律法要訣(4)	Cabinett Lawyer 著	〃	飜譯局	
68 萬國通私法(3)	若山儀一著	〃		
69 訴訟必携(3)	根岸錦重 譯	〃		
70 聯邦商律(2)	米 팔손 著, 藤田九二 譯	1874		
71 萬法精理(18)	Montesquieu 著 何禮之 譯	1875 (明治 8)	司法省	서울大(1928)
72 類聚佛國刑法(4)	明法察 編纂	〃		
73 惠頓氏萬國公法(始戰論)(2)	Wheaton 著 大築拙藏 譯	〃	明法察	
74 佛蘭西邑法	부-흐 著, 大井憲太郎 譯	〃	文部省	
75 各國立憲政體起立史(6)	비멜만 著, 加藤弘之 譯	〃	谷山樓	
76 萬國政體論(3)	Casper Hopkins 著 箕作麟祥 譯述	〃	中外堂	
77 國體新論	加藤弘之 著	〃	谷山樓	國立(1939)
78 佛國商法講義(2)	집스케 講述	〃		
79 代議政體	Mill 著, 永峰秀樹 譯	〃		國立(1943)
80 律例精義 第一卷	Montesquieu 著 鈴木唯一 譯	〃		
81 律例精義大意	달랑베르, 鈴木唯一 譯	〃		서울大(1944)
82 政律龜鑑(2)	青木精一 譯	〃		
83 王國建國法(2)	라헬리엘, 井上毅 譯	〃		
84 佛蘭西憲法	집스케 口譯 生田精 筆錄	1876 (明治 9)	博文社	
85 合衆國民業律(5) 原著 : Laws of Business	Theorius Parsons 著	〃		
86 民法論綱(6)	Bentham 著, 何禮之 譯	〃		서울大(1939) 原名:Principles of civil code
87 佛國民法註釋	비꼬 著, 山崎直胤 譯	〃	坂上半七發兌	Code Napoleon expreque
88 英國等親并不動產相續法圖解	英 Blackstone 著	〃	法制局藏版	Commentaries on...
89 堅土氏萬國公法	James Kent 著 藉地事務局 譯	〃	坂上半七	

册　名　(卷　數)	著者 및 譯者	發行年	發　行　處	韓國傳來(연도)
90 萬國公法蠡官(8)	H. Wheaton, 丁韙良 譯, 高谷龍洲註解中村正直批閱	1876	濟美堂	國立(1924)
91 英美普佛 立憲政體一覽表	藤井惟勉 編	〃		
92 佛蘭西憲法撮要(2)	大內董平 編	〃		
93 佛國法律撮要(8)	箕作麟祥, 大井太郎 譯	〃		
94 佛蘭西法律要略(2)		〃		
95 佛蘭西公法(2)	黑川誠一郎 譯	〃		
96 法律沿革事體	小林唯七郎 譯	〃		서울大(1929)
97 歐洲各國憲法	田中耕造 譯	〃		國立(?)
98 日耳曼議院之法		〃		
99 英國倒行律例(2)	川路寬堂 著	〃		
100 佛國刑法說約(2)		〃	法制局	
101 官吏選擧法		〃		
102 英國行政談(2)	小林儀秀 譯	〃		
103 分權論	福澤諭吉 著	〃		
104 加福尼亞州選擧法	紙幣寮 譯	〃		
105 治罪要錄	山內豁朗 編纂	1877 (明治10)	岡島新七	
106 性法講義	Gustav Emil Boissonade 講義, 井上操 筆記	〃	司法省	
107 本朝民鑒	福鎌芳隆 編著	〃	千鍾房	
108 憲法志科	木村正辭 編	〃	司法省	
109 刑法論綱(9)	J. Bentham 著, 林董 譯	〃		
110 佛國刑法略論	高木豊三抄 譯	〃	司法省藏版	
111 刑法撮要	G.E. Boissonade 講說 井上操 筆記	〃	〃	
112 海氏 萬國公法	Heffter 著, 荒川邦藏, 木下周一 合譯, 寺內章明 校訂	〃	司法省	
113 英國商工法鑑	大井憲太郎 譯	〃	司法省藏版	
114 佛國民法契約書解釋方法說明	箕作麟祥 抄譯	〃	〃	
115 佛國民法詳說	C. Demolombe 著 箕作麟祥 譯	〃	〃	
116 英國會社類 編	和田信郎 譯, 大江運 校	〃	大藏省藏版	
Shelford 著, The law of joint stock company 의 抄譯				
117 孛國財產相續法	中江篤介 譯	〃	司法省藏版	
118 英國財產相續法	同	〃	同	
위 두 책은 Antoine de Saint-Joseph의 Concordance entre code civil étrangères et le Code de Napoleon의 抄譯				
119 佛蘭西刑法講義	Robelt Lipman 講義	〃	大版裁判所藏版	
120 佛國民選議員規則	大井憲太郎 譯	〃		
121 國政黨派論	Bluntschli 著, 杉亨二 譯	〃		
122 分權政治初篇	若山儀一 編	〃		
123 政學概論(2)	中金正衡 著	〃		
124 法律提要	大井憲太郎 譯	〃		

册 名 (卷 數)	著者 및 譯者	發行年	發 行 處	韓國傳來(연도)
125 民約論	J.J. Rousseau 著 服部德 譯	1877		
126 民權問答(4)	兒島彰二 編	〃		
127 英國政典	平井正 譯	〃		
128 權理提綱(2)	Spencer 著, 尾崎行雄 譯	〃		
129 佛國邑法	熊本敬一 譯	〃		
130 國制沿革略史(3)	天野御民 譯	〃		
131 佛國刑法註釋	內田正雄 譯	〃		
132 英國會社類篇	和田信郎 著	〃		
133 佛國民法解釋(20)	J. Delsol 著, 箕作麟祥 譯	〃	司法省	
134 歐州各國憲法	田中耕造, 齊藤利敬 譯, 細川潤次郎 校正	〃	元老院	
135 泰西古今 法律類鑑(2)	Mackenzie, 何禮之 譯	〃		
136 佛國行政法	田中耕造 譯	〃	東洋社	
137 法學指鍼(2)	벨베크 口譯 忘筌社員 筆受	〃	金港堂	
138 佛國區長手鑑	長田銈太郎 譯 伊藤博文 題辭	1878 (明治11)		
139 佛國政法揭要	山崎直胤 纂譯	〃	有栖川宮家 博聞社出版	
元老院議長 有栖川 熾仁親王이 纂譯을 命하여 百官에 하사함.				
140 米國法律原論(4)	高橋達郎 譯	〃	司法省	
Thomas Smith 著, 'Elements of the law'를 번역한 것.				
141 埃及法律書	箕作麟祥 譯	〃	〃	
142 佛蘭西和蘭陀 HOTEL 規則	長森敬斐 譯	〃	司法省藏版	
143 佛國政法理論	出版自由之部 編纂課譯	〃	〃	
(Anselme-Polycarpe Batbie의 'Traitè du droit public et administratif'를 번역한 것.)				
144 佛國商法講義	George Bousquet 강의 黑川誠一郎 口譯	〃		
145 佛國刑法講義	Boissonade 강의 名村泰藏 口譯	〃	司法省藏版	
146 佛國治罪法講義	同	〃	〃	
147 佛國訴訟法講義	〃	〃	〃	
148 公法便覽	Woolsey 著, 丁韙良 譯, 妻木賴矩, 水野忠雄訓點 出版	〃		
149 佛蘭西 民法賣買篇講義	Beiné 강의	〃	大坂上等裁判所 藏版	
150 立法論綱(4)	島田三郎重 譯	〃	元老院藏版	서울大(1927)
Bentham 著, 「Principles of legislation」 번역.				
151 强姦檢察法	鳥越未譽至 譯	〃		
英 Alfred Swain Taylor, 美 Edward Harzholn 補, 「Medical jurisprudence」의 번역				
152 佛國民法契約篇講義	Robelt Lipman 강의 澁川忠二郎 譯	〃	岡島新七出版	
153 佛國警察提要	渡正元 譯	〃	博聞社	

册　名　(卷　數)	著者 및 譯者	發行年	發　行　處	韓國傳來(연도)
154 佛國民法國字解(3)	田中耕造纂 譯	1878	櫻鳴社	
155 會員必携	細川潤次郎 譯	〃	元老院	
「The young debater and chairman's assistance」의 번역				
156 婦女法律論	鈴木義宗 譯	〃	叢書閣	
「Difference of sex」를 번역한 것. (Sheldon Amos 著)				
157 會員必讀	細川潤次郎 譯	〃		서울大(1944)
158 法律一班	馬場辰猪 著	〃		
159 佛國司法三職考	井上毅 著	〃		
160 法律格言	細川潤次郎 著	〃		國立(1942)
161 英國法律全書(7)	Blackstone 著, 星亨 譯	〃	有爲社	
162 佛國州會法則	松岡秀三 譯	〃		
163 各國議會概覽	飯島有年 編	〃		
164 佛國地方分權論	大森鐘一 譯	〃		
165 三法論綱	小笠原美治 著	〃		
166 樸兒酒兒氏分權論	Voltaire 著, 元老院 譯	〃	元老院	
167 治罪法備攻 下篇(5)	井上毅纂 譯	〃	警視局	
168 佛國治罪法略論	부흐 著, 高木豊三, 井上操 譯	〃	司法省	
169 佛國訴訟法原論(4)	E. Bonnier 著 中江篤助 譯	〃	〃	
170 德川禁令考	菊地駿助 編	〃	〃	
171 佛國法律提要	箕作麟祥, 大井憲太郎 譯	1879 (明治12)	葆光社	
172 佛國民法契約篇講義	Albert Beine 강의	〃	大坂上等裁判所	
173 佛國民法講義交換部	Albert Beine 강의	〃	〃	
174 佛國民法財產篇講義	Albert Beine 강의	〃	〃	
175 佛國民法釋義	箕作麟祥 纂譯	〃	山城屋, 島屋	
176 法令沿革表	大藏省記錄課 編纂	〃	大藏省	
177 法制局說明錄	府縣會規則之部	〃	法制局	
178 佛國民法釋要	加太邦憲 譯	〃	司法省	
Picot 著「Nouveau manuel pratique du Code Napoleón」을 번역한 것				
179 思想之法	鈴木唯一 譯	〃	文部省	
William Tompson 著, An Outline of the neccessary laws of thought의 번역				
180 佛國刑法講義	그로스 講義	〃	警視局	
181 商法要鑑	小野彦太郎 編輯	〃	文求堂	
182 新律綱領 改定律例 沿革摘要 改定條例		〃	警視局	
183 英國禁令狀	山本謙三 譯述	〃	司法省	
184 英國治罪法(2)	W. Blackstone 著 西村玄道 譯	〃		
185 佛國政法論	岩野新平, 高橋太郎, 松原旦次郎, 井田鐘次郎, 松田正久, 大井憲太郎 譯	〃	司法省	
(Batbie 著, 「Traitè du droit public et administratif」 번역				

册 名 (卷 數)	著者 및 譯者	發行年	發 行 處	韓國傳來(연도)
186 民法論綱緖論	E. Dumont 著 島田三郎 重譯	〃	律書房	서울大(1939)
187 米國選擧法	鈴木義宗 纂譯	1879		서울大(1935)
188 英國議院論	渡邊恒吉 譯	〃		
189 英國國會沿革誌(3)	高橋基一 譯	〃		서울大(1933)
190 法律原論(4)	Terry 著, 島田三郎 譯	〃		
191 官民 議場必携	로베르트 著 永峯秀樹 譯	〃		
192 佛國民法期滿得免篇講義	Boissonade 강의 一瀨勇三郎 筆記	1880 (明治13)	司法省	
193 佛國民法財產編講義	Boissonade 강의 大島三四郎 筆記	〃	〃	
194 Acollas氏 佛國民法提要	小島德太郎 譯	〃	〃	서울大(1939)
195 Boissonade氏 佛國民法契約編 第2回講義	岩野新平 筆記	〃	〃	
196 獨乙民法通論	Bernhard Windscheid 著 山脇玄, 平田東助 譯	〃	〃	
197 佛國常用法	箕作麟祥 纂輯	〃	司法省	
198 英國律法要譯(6)	Cabinet Lawyers, 中村正直, 村田文夫, 鈴木唯一 譯	〃	〃	
199 佛國刑法詳訣	베르토르 著, 福原直道 譯	〃	〃	
200 法律大意講義	Boissonade 강의 加太邦憲 筆記	〃	〃	
201 孛國地方行政法類集	荒川邦藏 譯述	〃	內務省	
202 本朝政體	四屋純三郎 編纂	〃	丸 屋	서울大(1949)
203 上等裁判 民事判決錄		〃	宜報社	
204 佛國縣會法詳說	加太邦憲 譯	〃	司法省	
아드리안 쥬란 著, 「Des Conseils generaux de parlements」 번역				
205 伊太利商法	松下直吉, 中村健三, 立木賴三, 杉村虎一 重譯 長森敬斐 校	〃		
206 治罪法講義 隨聽隨筆	淸浦奎吾 口述	〃	警視廳第三分署	
207 刑法對照	池上三郎 編纂 福地源一郎 序	〃	萬字堂	
208 治罪法註釋	織田純一郎 著	〃	坂上半七	
209 治罪法註釋(8)	村田 保 註釋 熾仁親王 題辭	〃	正榮堂	國立(1938)
210 治罪法義解(7)	太田聿郎 註譯, 三權吉, 山住才三 校, 土居通夫 檢閱	〃		
211 治罪法註釋	長井正海 註釋	〃	東京法學社	
212 刑法註釋(8)	村田保 註釋	〃	正榮堂	서울大(1928)
213 豪氏法學講義節約	Austin 강의, 大島貞益 譯	〃		
214 村會議事便法	松本新聞社 編	〃		
215 國憲論篇	山岸文藏 編	〃		서울大(1937)
216 佛國法典改正論	에밀 아고라스 著, 岸本辰雄內藏直亮 譯, 西園寺公望 題辭	1881 (明治14)	知新社	

册　名　(卷　數)	著者 및 譯者	發行年	發 行 處	韓國傳來(연도)
217 治罪法講義	横田國臣口述 高瀨四郎 筆記	1881	金港堂	
218 佛國刑法實用	호스타네리 著 加太邦憲 譯	〃	司法省	
219 刑法義解(7)	太田聿郎 註解, 森權六, 山住才三校正, 土居通夫 檢閱	〃		
220 政治論略	Edmund Burke 著 金子堅太郎 譯	〃		
221 日本憲法論纂	佐藤茂一 編	〃		
222 各國憲法類編	元老院 編	〃		
223 英國憲法論	澁江保, 山田要藏 譯	〃		
224 國家論(2)	平田東助 譯	〃		
225 日本刑法論	宮城浩藏 著	〃		
226 情供證據誤判錄	高橋健三 譯	〃	司法省	
英 Philips 著, 「Famous cases on circumstancial evidence」 번역				
227 公法會通(5)	Bluntschli 著	〃	樂善堂	國立(1938)
228 佛國治罪法講義	Boissonade 강의 名村泰藏 口譯	〃	弘令社	
229 伊太利王國民法	佛 Joseph M. Orsier 著 光明寺三郎 譯	1882 (明治15)	司法省	서울大(1937)
230 魯西亞民法(3)	寺田 實 譯	〃	〃	
231 嗹馬民法	佛 Anthoine de Saint-Joseph, 玉置良造 譯	〃	〃	
232 英佛民法異同條辯	佛 Antoine de Saint-Joseph, 馬屋原二郎 譯	〃	〃	
233 民約譯解	Rousseau 著, 中江兆民 譯	〃		
234 佛國商法復說	商法編纂局 譯	〃	太政官	
H.F. Rivière 著, 「Repétition écrites sur le Code de Commerce 6e èd」를 번역, 明治 18년 4월 제 4편 동년 8월 書式으로서 끝남.				
235 地方沿革略譜	保科保 編輯	〃	內務省圖書局	
236 英國慣習律攬要	John Williams Smith 著 肥塚龍 譯	〃	司法省	
237 獨逸刑法	名村泰藏 譯	〃	司法省	
238 區米各國諸裁判所 民刑判決軌範	佐藤隼吉纂 譯	〃	競錦書房	
239 訓点法國律例	鄭永寧訓點	〃	司法省	國立(1938)
240 孛國地方官一班(3)	荒川邦藏 譯	〃	內務省庶務局	
241 孛漏生國法論	木下周一, 荒川邦藏 譯	〃		
242 Mourlon 佛國民法覆義	岩野新平, 井上操, 黑川誠一郎, 一瀨勇三郎, 內藤直亮, 高木豊三, 弁田鏃次郎, 大鳥三四郎, 木下哲三郎 譯	〃	司法省	서울大(1939)
「Répétitions écrites sur le premier, deuvième et troisième examens du Code Napoleon」				
243 荷蘭國民法	福地宗良 譯	〃	司法省	
244 亞米利加合衆國累斯安州民法	〃	〃		
245 瑞士國邊留奴邦民法	玉置良造 譯	〃		서울대(1937)
이상 3書 모두 佛의 Antoine de Saint-Joseph의 「Concordance entre les codes civils étrangères et de Code Napoléon」 중에서 抄譯한 것.				

册 名 (卷 數)	著者 및 譯者	發行年	發 行 處	韓國傳來(연도)
246 伊佛民法比較論評	佛 T. Hac. 光明寺三郎 譯	1882	司法省	서울大(1937)
247 政體論	宇川盛三郎, 大森鐘一 譯	〃	博聞社	
248 孛國憲法	井上毅 纂譯	〃	〃	서울大(1937)
249 刑法一覽表		〃	元老院	
250 人權新說	加藤弘之 著	〃	谷山樓	
251 人權新說駁論	矢野文雄 著	〃	報知社等	
252 人權新說駁擊新論	石川正義纂輯	〃	和田篤太郎	
253 阿尼矢莫夫氏 魯西亞刑法(2)	寺田實 譯	〃	司法省	
254 新刑法擬律筌蹄(3)	原口令成 著, 矢野駿男 校, 草間時福序	〃	弘令社	
255 米國加利忽尼亞州刑典	平賀義質 譯	〃	司法省	
256 白耳義刑法	今村和郎 譯	〃	司法省	
257 刑法義解	高木豊三 著	〃	時習社	
258 治罪法註釋	立野胤政 編	〃	山中市兵衛	
259 陸軍海軍 刑法註釋	松尾源藏 註釋 織田純一郎 校閱	〃	山 中	
260 治罪法註釋	小笠原美治 註釋 磯部四郎 校訂	〃	弘令社	
261 治罪法決疑錄	大室傳 著	〃	正榮堂	
262 佛國檢官必携(7)	J. Massabiau 著 黑川誠一郎, 高木豊三 譯	〃	司法省	
263 獨乙治罪法	分析研介 譯	〃	〃	
264 佛國刑律實用治罪法之部	Faustin, Hélie 著, 井上操, 一瀨勇三郎, 龜山貞義 譯	〃	〃	
265 現行實際 法制法手續	松永源七 著 織田純一郎 校閱	〃	畏三堂	
266 惠頓萬國公法	大築拙藏 譯	〃	司法省	
267 政法原論(2)	青木匡 譯	〃		
268 共和原理(2)	奧官健之 譯	〃		서울大(1935)
269 政治提綱	甽德次郎 纂譯	〃		
270 國憲汎論	小野梓 著	〃		
271 萬國政典	中山克己 纂譯	〃		
272 會議法	鳩山和夫 著	〃		서울大(1939)
273 憲法論綱	Bentham 著 佐藤覺四郎 譯	〃		
274 刑法原理獄則論綱	Spencer 저 山口松五郎 역	〃		
275 歐洲代議政體起源史(2)	藤田四纂, 漆間眞擧 譯	〃		
276 英國議院政治論(4册)	尾崎行雄 譯	〃		
277 國法國政學沿革史	玉田啓一郎 譯	〃		
278 英國法學捷徑(2)	高橋達郎 譯	1883 (明治16)	司法省	
279 法律大意 第2回 講義	Boissonade 강의 一瀨勇三郎, 市川亮功 譯	〃	〃	
280 革命新論	栗原亮一 抄譯	〃		

册　名　(卷　數)	著者 및 譯者	發行年	發　行　處	韓國傳來(연도)
281 法理論	井上正一, 栗塚省吾 譯	1883 (明治16)	司法省	
W. Belime 저, 「Philosophie de droit ou cours dintroduction à la science du droit」 번역				
282 法律原論(4)	河村善益 譯 黑川誠一郎 교열	〃	博聞社	
283 Mourlon氏 佛國民法覆義 (第1秩)	谷井元次郎, 小倉久 譯	〃	司法省	
284 佛蘭西民法(5)	加太邦憲, 中村健三 譯	〃	知新社	
285 佛蘭西民法賣買篇講義筆記	Boissonade 강의, 堀田正忠口訣, 陲正邦 筆記	〃	博聞社	
286 刑法精義(2)	河津祐之譯補, 土居通予校正	〃	大坂出版公社	國立(1940)
287 英國刑事訴訟手續(5)	出浦力雄 譯	〃	司法省	
288 佛國訴訟法覆義		〃	元老院	國立(1937)
Mourlon 著, 「Rèpètitions écrites sur l'organisation judiciarie, la compétence et la procédure civile et commerciale」를 번역한 것.				
289 全國商事慣例類聚	商法編纂局 編	〃		
290 法律語彙初藁		〃	司法省	서울大(1928)
291 佛國民法解釋	Delsol 著, 箕作麟祥譯	〃	〃	
292 民約論覆義	Rousseau 著 原田潛譯	〃	春陽堂	서울大(1944)
293 各國民法異同條辯	佛 Anthoine de Saint-Joseph 著 馬屋原二郎譯	〃	司法省	
294 英國憲法史	Erskin May 著, 島田三郎, 乘竹孝太郎譯	〃		서울大(1935)
295 刑法述義	井上操著	〃	坂上半七	
296 日本刑法詳說	三坂繁人 著	〃		
297 德川禁令考後聚	菊地駿助 編	〃		
298 獨孛政典(7)	구 래-著 中根重一譯	〃		
299 英國憲法史(9)	山田喜之助 譯	〃		
300 英國憲法論(5)	바제 붓드 著 高橋達郎 譯	〃		
301 訴丁文氏 英國證據法	岸小三郎譯	明治17 (1884)	博聞社	
302 政法哲學	Spencer Herbert 著 浜野定四郎, 渡邊治 譯	〃	石川半次郎 (時事新報社)	
Principles of sociology vol. 2: Political institutions				
303 英國行政法	高田早苗 著	〃		
304 刑法釋義	堀田正忠 著	〃	警視廳	
305 巴威里憲法	曲木如長 譯	〃		서울大(1937)
306 羅馬法綱要	Hadley, J. 강의 土方寧, 有賀長雄 譯述	〃	弘道書院	
307 普國警察大要講義筆記(2)	Rudolf 강의 伊東巳代治 筆記	〃	警視廳	
308 司法制度大要講義筆記(3)	Techow, Hermann 伊東巳代治 筆記	〃	司法省	
309 法律字典(2)	Cadet, Ernest 著 若林友之譯大槻修二校訂	〃	青城書房 (宮城屋仙介)	
310 豪氏法理學(2)	John Austin 著 關 直彥 譯	〃	石川敎育書房	서울大(1926)
311 英法小言	G. Long 編 平賀義質 譯	〃	司法省	

册 名 (卷 數)	著者 및 譯者	發行年	發 行 處	韓國傳來(연도)
312 陸地戰例新選	丁是良 譯述 吉田賢補 訓點	1884		
313 通俗無上政法論	板垣退助述 植木 枝盛記 和田稻積編	〃	友友書屋	
314 普國憲法起原史	北尾次郎述	〃		
315 法理學講義	T.E. Holland 著 Elements of Jurisprudence 에 기해서 江木哀의 강의	1885 (明治18)	警視廳	
316 獨逸六法	山脇玄, 今村研介 譯	〃	獨逸學協會	
317 英國證據法詳解	Stephen, James F. 編 秋山源藏 口譯 北畠秀雄 筆記	〃	博聞社	
318 警務指令錄	島村安廣, 横江勝榮, 佐 成源五郎 共編	〃	警保局	
319 社會行政法論(11)	Hermann Roesler 原著 하리요-스레루 著 江木衷 譯	〃	警視廳	
320 佛國行政訴訟法論	D. Serrigny 著 田中耕造 譯	〃	司法省	서울大(1935)
321 主權原論	陸實 譯述	〃	博聞社	
佛 Maistre, Joseph de의 저서를 번역한 것.				
322 社會學之原理	Spencer 著, 垂竹孝太郎 譯述, 外山正一閲	〃	經濟學講習會	서울大(1926)
323 麟氏英國會社法	Nathaniel Lindley 著 山田喜之助 譯述	〃		
324 刑法講義(2)	宮城活藏講述	〃	明治法律學校	
325 英國政典	高田早苗講述	〃	晩青堂	
326 民法集解	堀田正忠, 森順正 著 Boissonade 보조	〃	二書房	
327 英國改定倒產條例(3)	奥田義人 譯	〃	制度取調局	
328 海上保險法全書	牟田 豊 譯	〃	農商務省	
329 天然法 (一名 法理學階梯)	Alfonse Boistel 著 黑川誠一郎 譯	1886 (明治19)	司法省	
330 大英律	William Blackstone 著 石川仲甫 譯	〃	勝島萬助	
331 英米身分法	高橋捨六 著	〃		國立(1937)
332 佛國民法契約篇講義		〃	泰東法律學校	
333 佛國民法證據篇講義	一瀨勇三郎 謀述	〃	司法省	
334 歐洲諸國軍事裁判職權誌	제므랑 譯述 肥田野默 重譯	〃	陸軍省	
335 孛國行政法典	Faustin-Hélie A. 著 荒川邦藏 譯	〃	內務省總務局	서울大(1935)
336 政治學	合川正道 著	〃	牧野書房	
337 治罪法講義(3)	井 上操述	〃	知新社	
338 佛國刑法大全(2)	Faustin-Hélie, A. 著 龜山貞義, 內藤直亮, 橋 本胖三郎 共譯	〃	司法省	
339 獨乙訴訟法要論	Hermann Hitting 著 渡邊廉吉 譯	〃	博聞社	
340 佛國訴訟法撮要	Camuzet 著 加太邦憲 譯	〃	司法省	

册　名　(卷　數)	著者 및 譯者	發行年	發　行　處	韓國傳來(연도)
341 商政標準	天野爲之 著	1886	富山房	
342 法律解釋學	江木哀 著	〃	博聞社	
343 羅馬法	渡邊安積編輯	〃	英蘭堂支店	
344 法律原論(11)	R.v. Jhering 著 碩部四郎 譯	〃		서울大(1927)
345 理學鈎玄	少江兆民 著	〃		
346 法學通論(3)	Namur 著, 河地金代 譯	〃		
347 代理法	富井政章 著	1887 (明治20)	년中央法學會	
348 財產法	增島六一郎 著	〃	博文堂	
349 英國契約法	土方寧 著	〃	增島六一郎出版	
350 英吉利契約法	合川正道	〃	文盛堂	
351 契約法講義	富井政章述	〃	時習社	
352 佛國民法約說	深野達	〃	明法堂	國立(1941)
353 普魯西警察法(3)	Mascher 著	〃	警保局	
354 歐米各國典例要略		〃	元老院	서울大(1935)
Summary of the rules and procedure of foreign parliaments를 번역한 것.				
355 英米物品委託法	山田研一 著 土方寧 校閱	〃	泰山書房	
356 刑法汎論	江木衷 著	〃	博文社有斐閣等	
357 英吉利訴訟法	增島六一郎 講述 上野喜永次 簿記	〃	博文館	
358 佛國 民刑判決錄	다로스 著, 堀田正忠 抄譯	〃	文學社	
359 佛國商事會社法講義	岸本辰雄 講述	〃	明治法律學校	
360 民法要論	機井一久 講述 福永惟精 簿記	〃		
361 法令全書		〃	內閣官報局	
362 佛國商法略論	Boeuf 著, 司法省 譯	〃	司法省	
363 民法應用字解	磯部四郎 編	〃	元老院	서울大(1940)
364 憲法彙纂	吉屋宗作 纂譯 鹿島秀麿 校閱	〃		
365 商社法覆義	森順正 著	〃		
366 佛國商法講義	Boistel 著, 福原直道, 杉村虎一, 立木賴三 譯	〃	明法堂	
367 日本刑法講義	長森敬斐, 岸本辰雄 校, 井上正一 강의, 川淵龍 起, 山田豊策 執筆	〃		
368 行政學(3)	Stein 著, 渡邊廉吉 譯	〃		
369 國家學要論	土岐僙 譯	〃		
370 法學綱論(2)	富井政章 著	〃		
371 法律沿革論	增島六一郎 著	〃		
372 獨逸行政法論	Georg Meyer 著 澤井要一 譯	〃		
373 佛蘭西行政法論述	俟野時中 著	〃		
374 英國憲法新論	Amos 著, 平沼淑郎 譯	〃		
375 法理學講義	宮域活藏 譯	〃		
376 性法講義	Boissonade 강의 磯部四郎 譯	〃		

册 名 (卷 數)	著者 및 譯者	發行年	發 行 處	韓國傳來(연도)
377 英國衡平法	戶水寬人 著	1888 (明治20)	京橋活版社	
378 英國財產法講義(2)	三宅恒德述	〃	富山房	
379 大日本不動產法沿革史	横井時冬 編, 栗田 寬校	〃	丸谷新八	
380 佛國人事法講義	井上 正一 강술 岸本 辰雄 〃	〃	明法堂	서울大(1939)
381 安遜氏契約法	渡邊安積 講義	〃	三省堂	
382 日本治罪法講義	井上正一 講義, 川淵龍起, 山田風策 執筆	〃		
383 孛獨司法制度	本多康道 演譯 三好退藏 筆記	〃	司法省	
384 伊太利陸軍律	櫻井 精 譯	〃	陸軍省	
385 安遜氏契約法	伊藤悌治 講義	〃	三省堂	
386 佛國民法正解 明治 22년 11월 4권 완료.	Baudry-Lacantinerie 著 松室致, 飯田宏作, 古賀廉造 共譯	〃	司法省	서울大(1939)
387 各國講院章程		〃	法制局	서울大(1935)
388 萬國現行 憲法比較	辰巳小二郎 編	〃	哲學書院	서울大(1935)
389 日本古來財產相續法	丸山正彥 著	〃	松廬藏版 岩本米太郎發行	
390 白耳義國 獄則抄譯		〃	石川島分署	
391 治罪法約說	伊藤眞英 編 磯部四郎 校閱	〃	明法堂	
392 現行 刑法各論	江木衷 著	〃	博聞社 有斐閣	
393 佛國證據法詳解	富井政章 譯	〃	時習社	
394 獨逸訴訟法釋義	Puchelt 著, 司法省 譯	〃	司法省	
395 英米組合法	戶水寬人 著	〃	博聞堂	
396 佛國商法說要 商社之部	Lyon-Caen, Renault 共著 光明寺三郎 譯	〃	司法省	
397 國法汎論續譯	Bluntschli 著 平田東助 譯	〃	司法省	
398 憲法要義	合川正道 著	〃		
399 憲法理由	矢部積藏 著	〃		서울大(1937)
400 萬國公法要訣	沼崎甚三 著	〃		
401 亞米利加合衆國憲法	高良二 譯	〃		
402 日本行政法大意(2)	井坂右二 著	〃		서울大(1929)
403 佛國民法時效詳說大全	Marcadé 著 一瀨勇三郎 譯	1889 (明治22)	司法省	
404 英國證據法	岡村輝彥 著	〃	丸善商社	
405 行政法講義	薩陸正邦述	〃	中央法學會	
406 英國司法制度大要	Maitland 著 山岡義五郎 譯	〃	司法省	
407 國家論略, 獨逸帝國憲法要論, 孛國憲法要論	(合册) 野村靖編纂	〃	卷森英亮	서울大(1928)
408 國民ト國會トノ關係	阪谷芳郎, 山成哲造 譯補	〃	牧野書房	國立(1942)
409 英國憲法精理	天野爲之, 石原健三 合著	〃	富山房	
410 政治原論	市島謙吉 纂著	〃	森浪書院	國立(1943)
411 現行 治罪原論	江木衷 著	〃	有斐閣・博聞社	
412 刑法論綱	富井政章 著	〃	寶文館	

册　名　(卷　數)	著者 및 譯者	發行年	發　行　處	韓國傳來(연도)
413 須多因氏講義筆記	有賀長雄 筆記	1889	宮內省	서울大(1944)
414 日本商法學	磯村音介 著	〃	梅原龜七	
415 會社法	宮岡恒次郎 著	〃	几尾新助	
416 帝國憲法 皇室典範 義解	伊藤博文 著	〃	國家學會	서울大(1939)
417 內外臣民公私權考	井上 毅 著	〃	哲學書院	서울大(1937)
418 埃及混合裁判	原敬 著	〃	金港堂	
419 泰西監獄問答	小野田元熙 著	〃		
420 憲法及行政法講義	Stein 講義, 河島醇 譯編	〃		
421 憲法論	Dicey 著, 吉田熹六 譯	〃		
422 衆議院議員 選擧要論	川島純幹 著	〃		
423 大日本帝國 憲法義解	志方鍛 著	〃		
424 帝國憲法正解	元田肇 著	〃		
425 帝國憲法編	有賀長雄 著	〃		
426 帝國憲法要義	山田喜之助, 江木衷, 澁谷造爾 共著	〃		
427 憲法述義	井上操 著	〃		
428 憲法講義	磯部四郎 著	〃		

Ⅲ. 國際法學書의 受容

以上의 400여권의 西洋法學書를 분야별로 일일히 구분해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 중에 현저히 눈에 뜨이는 것은 國際法學書가 數的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初期에 활발히 번역·소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東洋이 西洋法學을 받아들임에 있어 가장 새롭고 직접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것이 당시 '萬國公法'이라고 번역되었던 international law 혹은 Völkerrecht 였기 때문이다. 中國·日本·韓國은 모두 西洋國際法을 통하여 近代的 法學을 처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9]

우리 나라에 처음 수입된 西洋國際法學書들은 대체로 中國에서 漢文으로 번역된 것들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이러한 漢譯國際法學書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公國公法」(1864)

이 책은 미국의 법학자 헨리 휘이턴(Henry Wheaton 惠頓, 1785～1848)이 쓴 Elements

(9) 이에 대하여는 Immanuel C.Y. Hsü, China's Entrance into the Family of Nations, Harvard Univ. Press, 1960; 李漢基, 韓國 및 日本의 開國과 國際法,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 19호, 1980; 李光麟, 韓國에 있어서의 '萬國公法'의 受容과 그 影響, 「東亞硏究」 제 1 집, 1982; 崔鍾庫, 韓國開化期의 國際法學, 「李漢基博士古稀記念論文集」, 博英社, 1987; 金孝全, 韓國에 있어서 國際法의 初期受容, 「李漢基博士古稀記念論文集」, 博英社, 1987.

of International Law (Philadelphia, 1836, 2 vols., London, 1863, 3rd ed. Philadelphia, 1845, 佛語版은 Leipzig and Paris, 1848)를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마아틴(William A.P. Martin, 丁韙良, 1827~1916)이 淸國 정부의 도움을 얻어 번역한 책이다.[10] 이 번역서가 우리 나라에 정확히 언제 수입되었는가는 분명치 않으나 文獻上으로는 日本과 江華島修好條約을 체결한 이듬해인 1877년 12월 17일 日本人 代理公使 花房義質이 우리 나라 禮曹判書 趙寧夏에게 이 책과 「星軺指掌」(1876)을 기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11]. 「星軺指掌」은 프랑스의 마르텐스(Charles de Martens)의 Le Guide Diplomatique (1866)를 번역하여 역시 淸國 同文館에서 간행한 것이다. 「星軺指掌」은 1876년에 간행된 것이니 日本側으로부터의 기증이 처음 傳來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萬國公法」은 13년 전인 1864년에 이미 나왔고 그 사이에 여러 차례 朝鮮使節이 淸國을 다녀왔기 때문에 中國으로부터 그 사이에 직접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 나라에는 서울大學校 法學圖書館과 徽文高等學校 圖書館에 淸國本으로 보이는 번역본이 소장되어 있다. 1981년에 亞細亞文化社에서 影印本을 간행하였다.

2. 「公法便覽」(1877)

이 책은 같은 번역자 마아틴이 미국의 테오도르 울시(Theodore Dwight Woolsey, 吳爾璽, 1801~89)의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New York, 1860)를 번역하여 淸國의 同文館에서 간행한 것이다. 울시는 본래 國際法學者는 아니고 희랍語 古典學者였지만 國際法 강의도 하고 본서를 저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25년간이나 예일(Yale)大學 總長을 역임하여 오늘날도 예일대학에는 울시館(Woolsey Hall)이 있다. 本書는 그의 아들인 테오도르 셀리스베리 울시(Theodore Salisbury Woolsey, 1852~1929)가 제 6 판(1891)에서부터 대폭 증보하여 더욱 유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훌륭한 저자의 권위있는 저서를 마아틴이 번역한 것은 훌륭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번역서가 언제 우리 나라에 수입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國內의 소장처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筆者가 日本 京都大學·圖書館의 소장본을 복사하여 1981년에 亞細亞文化社에서 影印本을 上·下卷으로 내었다. 內容의 量은 「萬國公法」보다 많고 앞에는 陳蘭彬의 序文과 致吳君의 書, 그리고 마아틴의 自書가 붙어 있으며, 또한 地球全圖가 붙어 있어 世界像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3. 「公法會通」(1880)

이 책은 같은 마아틴이 독일의 법학자 요한네스 카스파 블룬츨리(Johannes Caspar Blunts-

(10) 자세히는 拙稿, 韓國開化期의 國際法學, 위 논문집, 239면.
(11) 「日本外交文書」(韓國篇) 二, 서울, 泰東文化社, 1981, 302면.

chli, 步倫, 1808~81)의 저서 Das moderne Völkerrecht der civilisierten Staaten als Rechtsbuch dargestellt (Nördlingen, 1867)을 번역하여 同文館에서 출판한 것이다. 著者 블룬츨리는 원래 스위스人이지만 독일 하이델베르그大學에서 國法學(Staatsrecht)과 國際法을 가르쳤고 政治에도 관여한 당대 一流의 학자였다.(12) 그가 쓴 「回顧錄」(Denkwürdigkeiten aus meinem Leben, Bd. 3, 1884)에 보면, 번역자 마아틴夫妻가 1881년 6월 2일에 하이델베르크의 블룬츨리의 自宅을 방문하여 中國語 번역본을 증정하고 즐거운 환담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13) 이렇게 블룬츨리는 자신의 책이 中國語로 번역된 것은 알았지만, 그 번역서가 한국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몰랐을 것이다. 著者와 번역자가 알든 모르든 「公法會通」은 한국에 전래되어 1899년에 大韓帝國의 國制制定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法史學者들의 연구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이다.(14) 기록에 의하면, 1897년에 大韓帝國으로 선언할 때 당시 農商·部協辦이던 權在衡이 「公法會通」을 한자 한자 검토한 후에 高宗의 稱帝의 自由의 法理論을 건의하여 高宗의 決心을 움직이게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15) 特記할만한 사실은 이 「公法會通」은 단순히 淸國版을 朝廷이나 學者들이 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다시 출판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建陽元年 五月에 學部 編輯局長 李庚植의 序文을 붙여 大韓帝國版으로 간행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비록 純漢文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간행된 최초의 西洋法學書라고 하겠다. 이 책의 간행은 출판 그 자체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한국에 있어서 西洋法學의 受容의 속도와 强度를 나타내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16)

4. 「萬國公法要略」(1906)

1906년(光武 10) 11월에는 로렌스(T.G. Lawrence)의 Handbook of Public International Law (Cambridge 1885)의 漢譯本 「萬國公法要略」이 우리 나라의 達城 廣文社에서 重刊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1885년에 로렌스가 캠브리지大學과 海軍兵學校에서 강의한 것인데, 중국에서 선교사 영 알렌(Young J. Allen, 林樂知)이 번역하여 1903년에 上海의 廣學會(Society for the Diffusion of Christian and General Knowledge among the Chinese)에서 출판한 것으로 인쇄는 上海 商務印書館(Commercial Press)에서 하였다. 우리 나라의 廣文社版은 이 淸國本보다 活字가 작고 앞에 廣文社 社長 金光濟의 序文이 붙어 있다.(17) 日本에서는 이

(12) 자세히는 G. Kleinheyer, Deutsche Juristen aus Fünf Jahrhunderten, Karlsruhe 1976, S. 40-43: 崔鍾庫 編, 「法學人名辭典」, 博英社, 1987.
(13) J.C. Bluntschli, Denkwürdigkeiten aus meinem Leben, Bd. 3, 1884, S. 488.
(14) 田鳳德, 大韓國 國制의 制定과 基本思想, 「韓國近代法思想史」, 博英社, 1981, 99-118면 : 崔鍾庫, 「韓國의 西洋法受容史」, 博英社, 1981, 25면 : Chongko Choi, Die Rezeption des deutschen Rechts in Korea, 「韓獨法學」, 제 5 호, 1985, 23-30면.
(15) 「高宗實錄」 光武 元年(1897) 9月 25日條.
(16) 자세히는 崔鍾庫, 「韓國의 西洋法受容史」, 博英社, 1982 참조.
(17) 金光濟에 관하여는 拙稿, 石藍 金光濟, 韓國의 法律家像, 「司法行政」 1987년 2·3월호.

책이 1897년에 陸奥廣吉이 번역하여 「國際公法摘要」(丸善株式會社)로 출판되었다.

以上과 같이 우리 나라에 소개된 4권의 西洋國際法學書를 보면, 당시 가까스로 開國한 直後에 여러 권이 소개되었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日本의 明治時代에 번역된 國際法學書가 상당수 전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도 발견된다. 중국으로부터의 漢譯法學書를 수입하기 보다 日本語 번역서를 수입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제임스 켄트(James Kent, 1763~1847)의 저서 Commentaries on International Law (Ed. by J.J. Abdy, 2nd ed. London 1878)을 大音龍太郎(舊蕃地事務局) 譯校로 출간한 「萬國公法」(1877), 미국의 헨리 할랙(Henry W. Halleck)의 저서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Philadelphia, 1866)을 秋吉省吾 譯, 穴山篤太郎 出版으로 낸 「波氏萬國公法」(有麟堂, 1877, 1879, 木版 6册), 헤프터(A.G. Heffter, 海弗得)의 Europäisches Völkerrecht (1844)를 베르그송(J. Bergson)이 佛譯한 Le droit international de l'Europe (1873)을 荒川邦藏, 木下周一이 共譯한 「海民萬國公法」(1885), 영국의 윌리엄 홀(William Edward Hall, 維廉義互浩兒)의 저서 A 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4th ed. by T.E. Holland, Oxford, 1899)를 立作太郎이 번역한 「ホール氏國際公法」(東京法學院 明法堂, 1900), 이태리의 알랙산드로 파테르노스트로(Alexandro Paternostro)[18]가 강술한 것을 安達峰一郎(1869~1934)가 通譯, 中村藤之進이 필기한 「國際公法講義」(明治法律學校講法會, 1898) 등의 책은 한국에는 전래되지 아니한 것 같다.

Ⅳ. 結 論

以上에서 西洋法學이 어떻게 極東의 한국에까지 전파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日本의 明治時代의 西洋法學書의 간행과 그것들의 韓國傳來 與否를 검토해 보고,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國際法學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 보았다. 明治年間에 일본에서는 400여 권에 이르는 法學書가 출판되었는 데에 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高宗年代에 도합 40권 정도의 法學書밖에 출판되지 못하였던 것은 量으로는 비교가 되지 아니한다.[19] 이것은 비단 量의 문제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西洋法學을 내용적으로 받아들이려는 熱意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때 韓日兩國의 西洋法受容史는 하나의 중요한 연구테에마를 이룬다고 하겠다.

대체로 말하여 우리 나라의 西洋法學書에 대한 관심과 受容度는 그리 높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서양法學書를 직접 구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것들을

(18) 그는 G.E. Boissonade의 후임으로 1890년 1월 20일부터 1893년 1월 19일까지 明治 司法省 顧問으로 활동하였다.

(19) 우리 나라의 法學書 全般에 관하여는 崔鍾庫, 開化期의 韓國法制史料, 「韓國學文獻硏究의 現況과 展望」, 亞細亞文化社, 1983 및 同人, 韓國法思想의 近代化過程, 「法史學硏究」 제 5집, 1984, 그리고 金孝全, 上記 論文 뒤에 붙인 '法學關係書籍年表'도 참조.

읽을만한 語學力이 부족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으로 건너가 공부한 開化派 知識人들도 일본 現地에서는 이런 책들을 읽었는지 모르나 복잡한 국내정치 사정 때문에 이런 책들을 갖고 들어오지 아니하였거나 몇권 갖고 왔다 하드라도 個人所藏에 그치고 이를 번역·소개할려는 용기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安鍾和가 1906년에 블룬출리(J.C. Bluntschli, 伯倫知理)의 「國家學」(廣學書舖)을 번역·출판한 것은 예외적인 의의깊은 일이었다고 하겠다. 그 외에는 대부분 한국인 법률가들이 낸 30여권의 法學敎科書들은 대체로 日本人 법률가들의 교과서를 번역하다시피 하여서 만든 책들이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開化期 法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가능하겠지만[20], 筆者는 이른바 飜譯法學을 過少評價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法學은 어차피 文學이나 예술같은 창작물은 될 수 없기 때문이고, 어느 나라에서나 法學의 출발은 飜譯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西洋法學書의 번역과 출판은 국내의 복잡한 정치사정으로 그리 높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특징과 한계를 보면서, 그러면서도 이나마라도 開化法學을 정립하는 데어 빼어놓을 수 없는 자료라는 점에서 계속 정리하고 평가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20) 예컨대 고려대학교편, 「近代西歐學問의 受容과 普專」, 1986 참조.